

KISCO 협력사 행동규범

(주)경인양행 및 계열사(이하 통칭하여 'KISCO')는 '사람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정진하며 투명한 경영을 통해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심어준다'는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법과 기업윤리를 준수하고, 올바른 기업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공존·상생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ISCO 협력사 행동규범은 KISCO와 협력사간 상호 존중하고 동반성장하는 과정에서, 협력사가 인권과 환경을 중시하며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실현을 위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과 노력에 동행할 것을 기대하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및 윤리 4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협력사가 관련 법률 및 규정과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아울러 하위 공급망 협력사에도 본 행동규범 조항에 준하는 내용을 전개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행동규범을 협력사가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KISCO 및 KISCO로부터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를 방문하여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으며, 규범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협력사는 개선사항에 대한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 계획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회사의 이행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 보완 및 개정될 수 있고, 본 행동규범은 KISCO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UN SDGs 17개 목표(제가 실제 참고하지 않았기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등 다양한 국제 규범 및 기준, 나아가 법적 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와 해당 국가의 법적 요건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1. 노동 및 인권

1.1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의 모든 근로행위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직 또는 퇴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최소 근로 연령에 미달하는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며, 청소년 노동 또한 최소 근로 연령과 근로시간,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정책(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근로시간 관리)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과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준수합니다. 근로자의 자국 언어로 명확한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작성하고, 제공되어야 합니다.

1.3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엄격히 금지하며,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4 차별 및 괴롭힘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들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민족, 장애, 종교, 정치 성향,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

2.1 산업안전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며,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합니다.

2.2 비상사태 대응

협력사는 비상 상황 보고, 근로자 통지 및 대피 절차, 근로자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잠재적인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하고 비상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비상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2.3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기계, 전기, 화학, 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을 포함한 확인된 모든 작업 현장의 위험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장 안전보건 정보와 교육을 모국어 등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3. 환경

3.1 환경 인허가 및 보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 승인 및 등록을 취득,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3.2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절감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량, 용수 사용량, 대기/수질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합니다.

3.3 유해물질 관리

협력사는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취급,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재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윤리

4.1 정도 경영 및 반부패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 등을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다른 대가를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4.2 공정거래

협력사는 공정 거래 관련 법률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3 개인정보보호

협력사는 공급업체, 고객사, 소비자 및 직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